

“독극물 콜라 더 없나 불안”

시민들 “광주·전남 모든 제품 리콜해야”

경찰 미공개 수사로 피해자 발생 못막아

코카콜라사의 소극적인 대처와 경찰의 조동 수사 미흡이 독극물 팔라 사건을 키워 독극물 공포를 더욱 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민들은 또 광주와 화순, 담양에 유통 중인 콜라를 회수하겠다는 회사 측의 입장 발표에 강한 불신을 보내며 광주·전남 지역의 코카콜라를 수거·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초동 수사 미흡=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인 박모씨가 협박 메일을 보낸 ID를 추적했으나, 명의가 도용된 것을 알고 용의자 추적에 난항을 겪었다.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회사 측과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내부에선 “장난기로 빚어진 해

프님일 것”이라는 시각도 많았다.

경찰은 “사건 진행을 공개할 경우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큰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독극물이 든 음료는 이미 슈퍼마켓에 진열돼 있었다. 자칫 인명 피해가 커질 뻔 했다. 또 용의자를 검거했지만 진술에 의존해 독극물 음료를 찾아내는 등 ‘뒷북’ 수사를 하고 있는 점도 독극물 공포를 키우고 있다.

◇제품 리콜=코카콜라는 수거된 제품은 광주시 북구 양산동 공장으로 옮겨 전량 폐기처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코카콜라 리콜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사’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슈퍼마켓에서 PET병 콜라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늑장대응 피해발생 인정하기 힘들다”
이명우 코카콜라 회장

한국 코카콜라보틀링㈜ 이명우 회장은 11일 “늑장대응으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광주 프라도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처음부터 ‘독극물을 섞었다’고 협박했으면 (제품 수거 등) 조치를 했을 텐데 협박 내용이 ‘돈을 주지 않으면 독극물을 섞겠다’는 가정이어서 경찰·법인과 소통하면서 물밀에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가 발생한 결과를 놓고 늑장대응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건이 잘못되면 심각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경찰의 힘을 얻어 신고하고 대응방안도 충분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독극물이 섞인 콜라를 마신 사람이나 마실 권리가 제한받는 소비자, 추구하는 방향과 다른 일을 겪은 회사 모두 피해자”라며 “독극물을 콜라를 마신 피해자가 100% 완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수거지역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독극물 협박사건 사례와 판례

매년 한차례 이상 발생
죄질 중해 대부분 실형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식음료에 대한 독극물 투입 범죄는 어두운 사회 분위기를 틀타 자주 발생했다.

가장 최근 발생한 독극물 음료 사건은 지난해 8월 충북 공주에서 발생했다. 엄모(56)씨가 모 식품회사를 상대로 ‘2억원을 주지 않으면 음료에 독극물을 넣겠다’고 3개월간 협박을 일삼아 경찰에 검거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9월에는 대구 달성공원과 두류공원에서는 벤치 위에 놓인 요구르트를 마신 노인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식중독을 일으켰다. 모두 14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독극물 협박범 구속

광주 서부경찰은 11일 코카콜라에 독극물을 투입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박모(여·41)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주사기로 코카콜라 PET병에 독극물을 투입한 뒤, 지난 8~9일 딥야 소재 식당과 화순군의 슈퍼마켓에 몰래 가져다 놓은 혐의다.

박씨는 앞서 코카콜라 홈페이지 및 회사 관계자 휴대전화를 통해 75차례에 걸쳐 “돈을 주지 않으면 콜라에 독극물을 투입해 유통시키겠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또 지난 1983년 서울 을지병원에서는 ‘20명을 더 희생시킬 것이다’는 협박 죄지와 함께 청산거리가 든 요구르트가 병원 취사장, 화장실 등에서 발견됐다. 입원환자 엄모씨는 독극물이 든 요구르트를 마시고 숨졌다. 이외에도 백화점 독극물 살포, 라면 스낵에 대한 독극물 투입 협박 사건 등이 매년 한 차례 이상 발생했다.

독극물 협박 사건에 대한 법원은 판결은 대부분 실형으로,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지난해 식품회사를 상대로 협박한 엄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 2004년 백화점 납품 과자에 독극물을 넣겠다고 협박한 강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독극물 협박 사건 재판부는 대부분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사회적으로 큰 위험성을 내포할 만한 행위임에 따라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뇌물죄 ‘고무줄 양형’ 확인

법원별 평균 2~36개월 차이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검은 돈’을 받아 행간 뇌물 사건에 대한 전국 법원의 양형이 법원·재판부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처음을 공개됐다.

11일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탁희성 박사 연구팀이 대검찰청의 의뢰로 작성한 ‘뇌물죄의 양형시스템 구축방안’에 따르면 뇌물액 범주가 같은데도 법원에 따라 평균 실형 형기가 최저 2개월에서부터 최고 38개월까지 차이가 났으며 평균 집행유예기간도 최저 6개월에서부터 최고 36개월까지 천차만별이었다.

뇌물액이 ‘100만원~500만원’인 경우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곳은 대전지법으로 평균 징역 22개월이 반면, 형이 가장 낮은 청주지법 종주지원은 평균 징역 4개월에 1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공직자 부패사법에 대한 엄단 의지를 보였음에도 일선 법원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한 사실

도 드러났다.

연구팀은 “대법원이 2003년 권고한 뇌물죄 양형기준에 의하면 뇌물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실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으나 단독 법관뿐만 아니라 합의부에서도 이런 양형례가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다.

법관별로도 뇌물사건 양형이 일관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합의부는 뇌물액이 ‘1천만~1천500만원’ 범주이고 같은 하위직 공무원이 연루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피고인은 징역 30개월·집행유예 36개월을 선고했지만, 공소사실을 부인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30개월을 선고해 차이를 나타냈다.

강화된 선정기준은 ▲교육청 및 학교 외에 학교급식실무협의회에 의한 지도점검 ▲식재료에 관한 서류 제시의무 ▲식육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얻은 자로 유통참여업체 기준 제한 등이다.

또 계약체결 기준을 변경해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이라는 내용을 삭제했다.

/황필수기자 hwangtae@kwangju.co.kr

7월 12일
(음 6월 17일)

◇전국날씨

날씨

태풍가자 장마속으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한 두 차례 비가 온 뒤 개겠다.

비온뒤 맵 22~29°C

비온뒤 맵 23~27°C

비온뒤 맵 22~25°C

비온뒤 맵 22~26°C

비온뒤 맵 22~29°C

비온뒤 맵 22~27°C

비온뒤 맵 22~25°C

비온뒤 맵 22~28°C

비온뒤 맵 21~27°C

비온뒤 맵 23~26°C

비온뒤 맵 23~29°C

<p